

충청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37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2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과징금 납부통지에 관한 사항이 자동차관리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근거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등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조례근거 규정 변경
 - “자동차관리법 제61조제3항” 을
→ “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” 으로
- 과징금 납부통지 규정 폐지
 -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과징금 납부통지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에 중복된 규정으로 삭제
- 기타 일부조문 삭제에 따른 조문 체계정비

3. 개정근거 : 자동차관리법제74조

4. 개정조례(안) : 별 첨

5. 신구조문 대비표 : 별 첨

6. 관계법령 발췌 : 별 첨

충청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자동차관리법 제61조제3항”을 “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 내지 제6조를 각각 제2조 내지 5조로 한다.

제2조(중전의 제3조) 제1항중 “납부통지서”를 “별지 제1호 서식의 납부통지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조 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----- 제74조제1항----- -----</p>
<p>제2조(과징금 납부통지) 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, 과징금의 금액, 납부기한, 장소를 명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삭제〉</p>
<p>제3조(과징금의 납부기한) ①도지사는 납부기한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의 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과징금의 납부기한) ①도지사는 납부기한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의 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.</p>
<p>② 내지 ③ 〈생략〉</p>	<p>② 내지 ③ 〈현행과 같음〉</p>
<p>제4조(과징금 처분대장) 〈생략〉</p>	<p>제3조(과징금 처분대장) 〈현행과 같음〉</p>
<p>제5조(부과·징수사무의 위임등) 〈생략〉</p>	<p>제4조(부과·징수사무의 위임등) 〈현행과 같음〉</p>
<p>제6조(시행규칙) 〈생략〉</p>	<p>제5조(시행규칙) 〈현행과 같음〉</p>

관계 법령 발췌

[자동차관리법]

제74조(과징금의 부과) ①건설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제2항·제44조제3항·제47조제4항 또는 제66조제1항에 해당되어 당해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, 자동차검사대행자,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(이하“정지처분”이라 한다)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당해 정지처분이 일반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[자동차관리법시행령]

제15조(과징금 부과·징수) ①건설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